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2010 년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 신청요강

---

2010. 4.

한국연구재단

(국 제 전 략 팀)

## 주요사항 신규대비표

| 구분               | 2009년   | 2010년   |   |           |           |           |           |    |    |    |    |    |    |      |      |       |      |
|------------------|---|---|---|-----------|-----------|-----------|-----------|----|----|----|----|----|----|------|------|-------|------|
| 1. 지원예산          | ◦63억원(신규 15과제, 계속 23과제)   | ◦78억원(신규 15과제 내외, 계속 33과제)  |   |           |           |           |           |    |    |    |    |    |    |      |      |       |      |
| 2. 지원분야          | ◦이공계/인문사회 전 분야  | ◦좌동   |   |           |           |           |           |    |    |    |    |    |    |      |      |       |      |
| 3. 지원규모          | ◦연 1억원 이내   | ◦좌동   |   |           |           |           |           |    |    |    |    |    |    |      |      |       |      |
| 4. 지원기간          | ◦3년 이내  | ◦좌동   |   |           |           |           |           |    |    |    |    |    |    |      |      |       |      |
| 5. 신청자격          | <b>분야</b>   | <b>국내연구자</b>  | <b>해외공동연구자</b>  |           |           |           |           |    |    |    |    |    |    |      |      |       |      |
|                  | 이공계   | 2007년 1월 1일 이후 학진등재(후보)지 또는 SCI, SCOPUS급 학술지 5편 이상의 연구업적  | 2007년 1월 1일 이후 국제수준저널(SCI, SCOPUS급)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업적         |           |           |           |           |    |    |    |    |    |    |      |      |       |      |
|                  | 인문사회  | 2007년 1월 1일 이후 학진등재(후보)지 또는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 3편 이상의 연구업적  | 2007년 1월 1일 이후 국제수준저널(SSCI, A&HCI, SCOPUS급)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업적 |           |           |           |           |    |    |    |    |    |    |      |      |       |      |
|                  |   | ◦좌동<br>◦국내연구책임자의 경우 국제수준 학술지에 최소 논문 편수 이상을 게재한 자(이공계:2편이상, 인문사회:1편이상)   |   |           |           |           |           |    |    |    |    |    |    |      |      |       |      |
| 6. 신청·참여 제한      | ◦이공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b>3개 이내</b> 로 한정<br>◦인문사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는 <b>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b>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b>1과제</b> 로 한정 | ◦이공계 : 좌동<br>◦인문사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b>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b>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b>1과제</b> 로 한정  |   |           |           |           |           |    |    |    |    |    |    |      |      |       |      |
| 7. 심사결과 반영       | ◦ <b>패널심사 점수(30%)와 국제동료평가 평균점수(70%)</b> 를 합산하여 패널 내 우선순위 결정   | ◦좌동   |   |           |           |           |           |    |    |    |    |    |    |      |      |       |      |
| 8. 연차평가          | ◦영문(자유형식)보고서 제출<br>◦연구재단 PM에 의한 온라인 평가  | ◦좌동<br>◦연구재단 PM, 외부전문가(WCU초청 해외 학자 등 해당분야의 우수연구자)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등급</th> <th style="width: 15%;">A(90점 이상)</th> <th style="width: 15%;">B(80점 이상)</th> <th style="width: 15%;">C(70점 이상)</th> <th style="width: 15%;">D(70점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결과</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불량</td> </tr> <tr> <td>조치</td> <td>계속지원</td> <td>계속지원</td> <td>연구비조정</td> <td>지원중단</td> </tr> </tbody> </table> | 등급  | A(90점 이상) | B(80점 이상) | C(70점 이상) | D(70점 미만) | 결과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조치 | 계속지원 | 계속지원 | 연구비조정 | 지원중단 |
|                  |   | 등급  | A(90점 이상)   | B(80점 이상) | C(70점 이상) | D(70점 미만) |           |    |    |    |    |    |    |      |      |       |      |
| 결과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    |    |    |    |    |      |      |       |      |
| 조치               | 계속지원  | 계속지원  | 연구비조정   | 지원중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제출  | ◦좌동<br>◦연구결과보고서 평가<br>※ 해외 연구자간 네트워크 형성 정도 및 국제컨퍼런스 유치 등 네트워크 형성 기여도 평가항목추가(평가 항목의 10% 내외 반영)<br>※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   |           |           |           |           |    |    |    |    |    |    |      |      |       |      |

# - 차 례 -

|                             |           |
|-----------------------------|-----------|
| <b>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b> | <b>4</b>  |
| 1. 사업목적 .....               | 4         |
| 1. 지원방향 .....               | 4         |
| <b>II. 사업내용 .....</b>       | <b>4</b>  |
| 1. 지원예산 .....               | 4         |
| 2. 지원분야 .....               | 4         |
| 3. 지원자격 .....               | 4         |
| 4. 지원유형 .....               | 5         |
| 5. 지원기간 및 규모 .....          | 5         |
| <b>III. 신청 .....</b>        | <b>5</b>  |
| 1. 신청기간 .....               | 5         |
| 2. 신청방법 .....               | 5         |
| 3. 제출서류 .....               | 6         |
| 4. 연구비 신청 및 참여제한 .....      | 6         |
| <b>IV. 심사 및 선정 .....</b>    | <b>7</b>  |
| 1. 심사절차 .....               | 7         |
| 2. 심사방법 및 내용 .....          | 7         |
| 3. 선정 및 협약체결 .....          | 8         |
| <b>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b> | <b>9</b>  |
| 1. 연구비 지급 .....             | 9         |
| 2. 연구비 관리 .....             | 9         |
| <b>VI. 보고서 접수 및 관리.....</b> | <b>10</b> |
| 1. 연차보고서 접수 및 평가 .....      | 10        |
| 2. 결과보고서 접수 및 평가, 관리 .....  | 10        |
| <b>VII. 간접연구비 지원.....</b>   | <b>12</b> |
| <b>VIII. 기타사항.....</b>      | <b>13</b> |

※ 붙임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 별첨 Proposal guideline (영문)

# I. 사업목적과 지원방향

## 1. 사업목적

- 해외 우수대학 및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촉진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 국내외 연구자원 및 연구능력의 접목으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강화

## 2. 지원방향

- 영문 연구계획서 작성을 통해 해외 우수한 연구자들의 연구과제 참여 확대
- 개인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수요에 기초한 Bottom-up 방식의 연구 지원
-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국제학술교류의 다변화와 학문의 균형발전 도모
-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로 국제적 심사자 풀(pool)을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 II. 사업내용

1. 지원예산(신규 지원비) : 1,843백만원 (15과제 내외)

2. 지원분야 : 전 학문 분야

- 우리나라 국익 및 학문발전, 과학기술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 또는 외국연구자와 공동연구가 필요한 연구주제

※ 단,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연구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연구분야분류표 대분류 학문분야 기준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3. 지원자격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률시행령 제5조

- 국내외의 대학(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그 소속교원
- 국내외 학술연구기관·대학 또는 그 소속연구원
-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의해 학술예술활동을 지원받는 과학자·예술가 또는 그 단체
- 대학의 시간강사
- 국내외 대학 등의 기관에서 연수 중인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

- 국내연구자와 해외공동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업적을 갖춰야 함

| 분야    | 국내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 해외공동연구자   |
|-------|---|---|
| 이공계   | 2007년 1월 1일 이후 학진등재(후보)지 또는 SCI, SCOPUS급 학술지 5편* 이상의 연구업적<br><b>*국내연구책임자 국제수준학술지 최소 2편이상 필수</b>         | 2007년 1월 1일 이후 국제수준저널(SCI, SCOPUS급)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업적         |
| 인문 사회 | 2007년 1월 1일 이후 학진등재(후보)지 또는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 3편* 이상의 연구업적<br><b>*국내연구책임자 국제수준학술지 최소 1편이상 필수</b> | 2007년 1월 1일 이후 국제수준저널(SSCI, A&HCI, SCOPUS급)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업적 |

※ 단독저서 및 단독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공동역서, 등록 완료된 국제 특허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단,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시 입력하여야 함

- 해외공동연구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국외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여야 함
- 연구보조원은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협약 당시 자격을 연구 종료 시까지 인정함(연구기간 중 신분 변동 시에도 보조원 인정)

#### 4. 지원유형 : 공동연구

- 국내·외 연구자 공동연구 수행 형태
- 연구책임자는 국내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 공동연구자는 국내외 연구자 모두 가능하며, 공동연구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 5.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규모    | 지원 예상과제 수 |
|-------|----------|-----------|
| 3년 이내 | 연 1억원 이내 | 15과제 내외   |

※ 지원규모는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임

### III. 신청

#### 1.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 2010. 5. 31(월) 14:00 ~ 6. 7(월) 18:00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확인 : 2010. 6. 8(화) ~ 6. 9(수) 18:00

####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영문연구계획서, 재직 확인서류(해외 연구자 대상. 소속기관 홈페이지 내용 출력 가능), 교환 서신(e-mail 등) 증빙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4. 연구비 신청 및 참여제한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를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이공계 분야 연구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비는 1인이 연 5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3과제로 한정함.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본 사업의 연구기간과 사업 성격상 해외출국을 하는 사업(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사업 등)의 연구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본 사업에 신청 및 참여할 수 없음.
- 글로벌연구실(GRL)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연구기간(총연구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는 본 사업에 신청 및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온라인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박사급연구원으로 본 사업에서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하는 박사급 연구원은 신청 및 참여제한 과제 수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0년 12월 31 이전인 과제는 신청 및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세부 사업에서 신청 및 참여제한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본 사업에

서도 그 예외를 인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IV. 심사 및 선정

### 1. 심사절차

| 단계 | 심사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1  | 요건심사<br>(온라인 시스템)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                         |
| 2  | 패널심사<br>(내국인 심사)                | 연구계획서 및 연구역량 심사    | 3배수 결정<br>(최종점수 30% 반영) |
| 3  | 온라인 전문심사<br>(Int'l Peer Review) | 연구계획서 및 연구역량 심사    | 최종점수 70% 반영             |
| 4  | 종합심사<br>(종합심사단)                 | 예산배분 및 선정과제 추천     |                         |

### 2. 심사방법 및 심사내용

가. 제1단계 심사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나. 제2단계 심사 : 1차 패널심사

- 심사주관 : 해당 전공분야 국내 심사자
- 심사방법 : 패널 심사
- 결과반영 : 과제수 3배수로 축약, 최종 점수에 30% 반영
- 심사내용 : 연구계획서 60% + 연구역량 40%

| 평가지표                   | 배점  |
|------------------------|-----|
| ▪ 연구계획서 평가 : 60%       |     |
| - 연구의 필요성              | 10% |
| -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      | 20% |
| - 연구방법의 적합성            | 10% |
| -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10% |
| - 연구자간 역할분담 및 예산배분 적정성 | 10%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역량 평가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실적과 연구계획의 연관성</li> <li>- 국내 연구자의 연구 및 활동 실적</li> <li>- 해외 공동연구자의 연구 및 활동 실적</li> <li>- 신청 연구자간의 공동연구 실적</li> </ul> </li> </ul> | <p>5%</p> <p>15%</p> <p>15%</p> <p>5%</p> |
|--|---|

다. 제3단계 심사 : 온라인 전문심사

- 심사주관 : 해당 전공분야 3인의 국외 심사자
- 심사방법 : 개별심사
- 결과반영 : 최종 점수에 70% 반영
- 심사내용 : 연구계획서 70% + 연구역량 30%

| 평가지표  | 배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계획서 평가 :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필요성</li> <li>-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li> <li>- 연구방법의 적합성</li> <li>-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li> <li>- 연구자간 역할분담 및 예산 배분 적정성</li> </ul> </li> </ul> | <p>15%</p> <p>20%</p> <p>15%</p> <p>10%</p> <p>10%</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역량 평가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연구자들의 대표적 연구업적<br/>(대표 연구업적 영문초록 이공계 5부, 인문사회 3부)</li> </ul> </li> </ul>   | <p>30%</p>   |

※ 신청자는 국외심사자 pool 구축을 위하여 연구계획서상 연구주제와 관련한 국외심사 후보자 5명을 추천하여야 함

라. 제4단계 심사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사위원회
- 심사내용
  - 전공 심사 결과 검토
  - 예산 배정, 정책적 고려 및 선정과제 추천

※ 상기 심사항목 및 내용은 학문분야별 특성 및 국외 심사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 및 협약체결**

가.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 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방지

나. 최종선정 : 예비선정 과정에서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다.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연구자, 연구기관(장) 3자간 연구비 협약체결



##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 ■ 해외공동연구자 연구비 지급 방법

- 과제신청 시 연구계획서에 국내외 연구자간 연구 기여율에 따른 예산 배분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해외공동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는 직접비(기자재 구입비 제외) 및 인건비에 한함(간접비 불허)
- 국내연구자 소속기관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국제통용 연구비 카드’를 발급하여 해외공동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장은 해외 공동연구원 소속기관과 별도 협약체결 후 연구비를 일괄 송금하여 해외기관에서 집행토록 할 수 있음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장은 전체 연구비를 정산하여야 함)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1차년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다년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지급

### 2.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당해 사업의 협약서 및 연구비 관련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연구기관장)이 중앙 관리하여야 함
  -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의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련 제반 규정(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 VI. 보고서 접수 및 관리

### 1. 연차보고서 접수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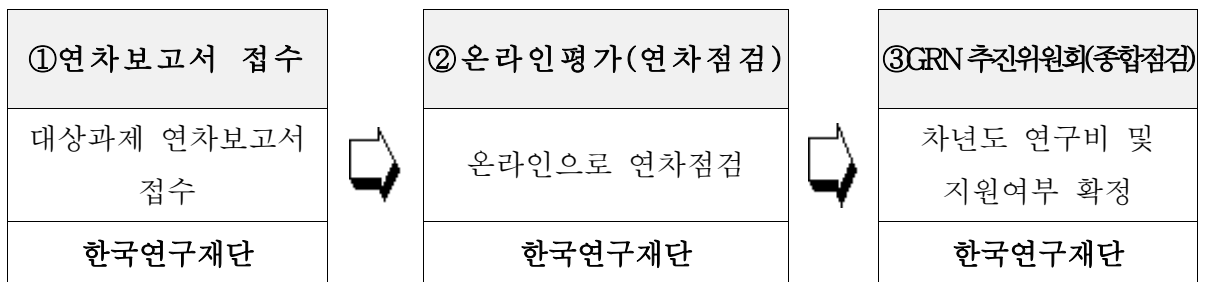
가. 제출대상 : 다년과제

나. 제출시기 : 차년도 연구개시 2개월 전

다.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라. 제출자료 : 연차보고서(영문, 소정양식) , 연구비 정산서

마. 연차평가 및 방법



※ 연차점검(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바. 점검(평가)결과 : 차년도 연구지원 여부 및 연구비 결정

| 등급 | A(90점이상) | B(80점이상) | C(70점이상) | D(70점미만) |
|----|----------|----------|----------|----------|
| 결과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조치 | 계속지원     | 계속지원     | 연구비조정    | 지원중단     |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조정 가능하며, 지원중단 결정시 중단 통보일을 종료일로 산정하여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2. 결과보고서 접수 및 평가, 관리

가. 결과보고서 접수

1)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3) 제출자료

◦ 온라인 입력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자 입력

- 연구요약문 : 연구자 입력

-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 입력

◦ 파일 탑재

- 연구결과 보고서(영문, 자유형식)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 일체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유관기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나. 결과보고서 평가

- 1) 평가대상 :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
- 2) 평가시기 : 결과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 3) 평가자 : 외부전문가
- 4) 평가기준 :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결과 수준, 연구결과의 활용성 등
  - ※ 해외 연구자간 네트워크 형성 정도 및 국제컨퍼런스 유치 등 네트워크 형성 기여도 10% 범위내외 반영
- 5) 평가결과 :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 ※ 결과보고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다.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 1)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책무
    - 이공계 : SCI, SCOPUS급 국제전문학술지
    - 인문사회 : SSCI, A&HCI, SCOPUS급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본인이 명시한 우수전문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함(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할 수 있음)
- ※ 과제 신청 시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통하여 생산된 논문을 게재할 우수학술지 3종을 명시하고, 연구종료 후 발표한 논문 중 당해 학술지에 반드시 1편 이상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 분  | 단년과제   | 다년과제          |
|------|--------|---------------|
| 이공계  | 2 편 이상 | 지원연수 × 1 편 이상 |
| 인문사회 | 2 편 이상 | 2 편 이상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참여자는 연구결과발표물 중 최소 1회 이상 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2) 연구결과 발표물 언어 : 외국어
- 3)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 4)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0-○○○(사업코드)-○○○○○(과제번

호)).”

5) 연구결과 발표물(게재논문 또는 저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①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전문 학술지 논문게재 및 저서 출판 등)을 미제출한 연구자와 신청 시 목표했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기간 종료 2년 후부터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상기 ①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 발표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지할 수 있다.
- ③ 위 결과물 제출 이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연구자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평가(연구결과보고서 평가 등)를 통해 연구결과물을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

라.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연구결과 산출된 결과물(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당해 연구과제의 협약 내용, 또는 연구비 관련 제반 규정에서 정한 내용(사립대학 포함)을 준용함

마.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한국연구재단에 송부하여야 함

## VII. 간접연구비 지원

1. 지원대상 : 선정과제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2. 지원기준 : 선정년도 기준지급
3. 지원비율 : 추후공고
4. 지원시기 : 지원결정 연구비 지원 시 일괄 지급
5. 사용범위 :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비

## VIII. 기타사항

- 심사 학문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함
  - ※ 연구분야분류표 대분류 학문분야 기준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문 의 처

- 사업관련 문의 : 국제전략팀 이은주
  - 전화 : 02)3460-5629, 02)3460-5614, 5632
  - Fax : 02)3460-5709
  - email : [basicss@nrf.go.kr](mailto:basicss@nrf.go.kr)
  - 주소 :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연구재단
  - 웹사이트 : <http://www.nrf.go.kr>
- 전산관련 (온라인 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 전산장애) 등 문의 : 정보팀 Help Desk
  - 전화 : 042)869-6114

**【붙임】 연구비 산정 . 집행기준표**

| 비목  | 세목       | 사용용도   | 계상기준  |
|-----|----------|--|---|
| 인건비 | 인건비      | 1. 연구보조원: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br>*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문)학사과정생 및 학사급 연구원: 월 50만원 이내<br>- 석사과정생 및 석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 이내<br>- 박사과정생: 월 150만원이내<br>*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상은 참여기간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br>* 다만,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br>*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초 참여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함. 다만,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2”를 준용할 수 있음 |
|     |          | 2 박사급연구원<br>*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 박사급 연구원 : 월 200만원 이내  |
|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 1.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br>2.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br>-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br>-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br>-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
|     | 연구활동비    |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현지교통비 등<br>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br>3.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수집비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운문교열비, 번역감수,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등<br>4. 현지조사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br>5.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br>6.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br>-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br>-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br>-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br>-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br>-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br>-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계상가능<br>- 논문게재료 등 연구결과 및 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집행가능하며, 미집행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 비목  | 세목   | 사용용도   | 계상기준   |
|-----|------|--|--|
|     | 연구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li> <li>*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연구원은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1인 연300만원 이내</li> <li>*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li> </ul>  |
| 간접비 | 간접비  | <p>1.인력지원비</p> <p>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p> <p>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p> <p>다.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p> <p>2. 연구지원비</p> <p>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p> <p>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p> <p>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p> <p>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p> <p>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p>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li> <li>-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li> </ul> |

| 비목  | 세목  | 사용용도  | 계상기준 |
|-----|-----|---|------|
| 간접비 | 간접비 | <p>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 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p> <p>3.성과활용지원비</p> <p>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 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p> <p>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p> |      |

- ※ 연구책임자 또는 일반공동연구원으로 신청하는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중 택일하여 신청할 것
- ※ 해외공동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는 직접비(기자재 구입비 제외) 및 인건비에 한함(간접비 불허)
-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신청 시에는 해당 기기의 연구기관 보유 현황 및 연구 종료 후 활용계획서 제출
- ※ 연구비 신청 시, 특정 세부항목(“인건비” 제외)이 전체 연구비의 70% 초과 시는 사유서 제출
- ※ 다년과제를 신청할 경우, 연구비 산정·집행기준 내역을 신청 연도별로 각각 산정하여 온라인상에 입력하여야 함